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24 조 및 GATS 제 5 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목적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

- 가.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촉진
- 나.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활성화
- 다. 양 당사국의 시장에서 공정 경쟁 증진
- 라.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그리고
- 마. 이 협정의 이익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틀 마련

제 1.3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기존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1.4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각국의 지방 정부에 의한 이 협정상 모든 의무와 약속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제 1.5 조 영역적 적용

1. 한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된다. 그리고
2. 중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 영역, 그리고 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지역에 적용된다.

제 2 절 정의

제 1.6 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반덤핑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 6 조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관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KCS) 또는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중국의 경우, 해관총서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¹

-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제 7 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는 한국의 관세법 제 69 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

- 라.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그리고
- 마.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지는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²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7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 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 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 년도 GATT 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 19.1 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원산지란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모든 단체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² 한국은 이 협정상 자유화되는 품목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유화되는 품목**이란 기본 관세율이 0 인 세번 또는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관세철폐 이행기간 후에 무관세인 세번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